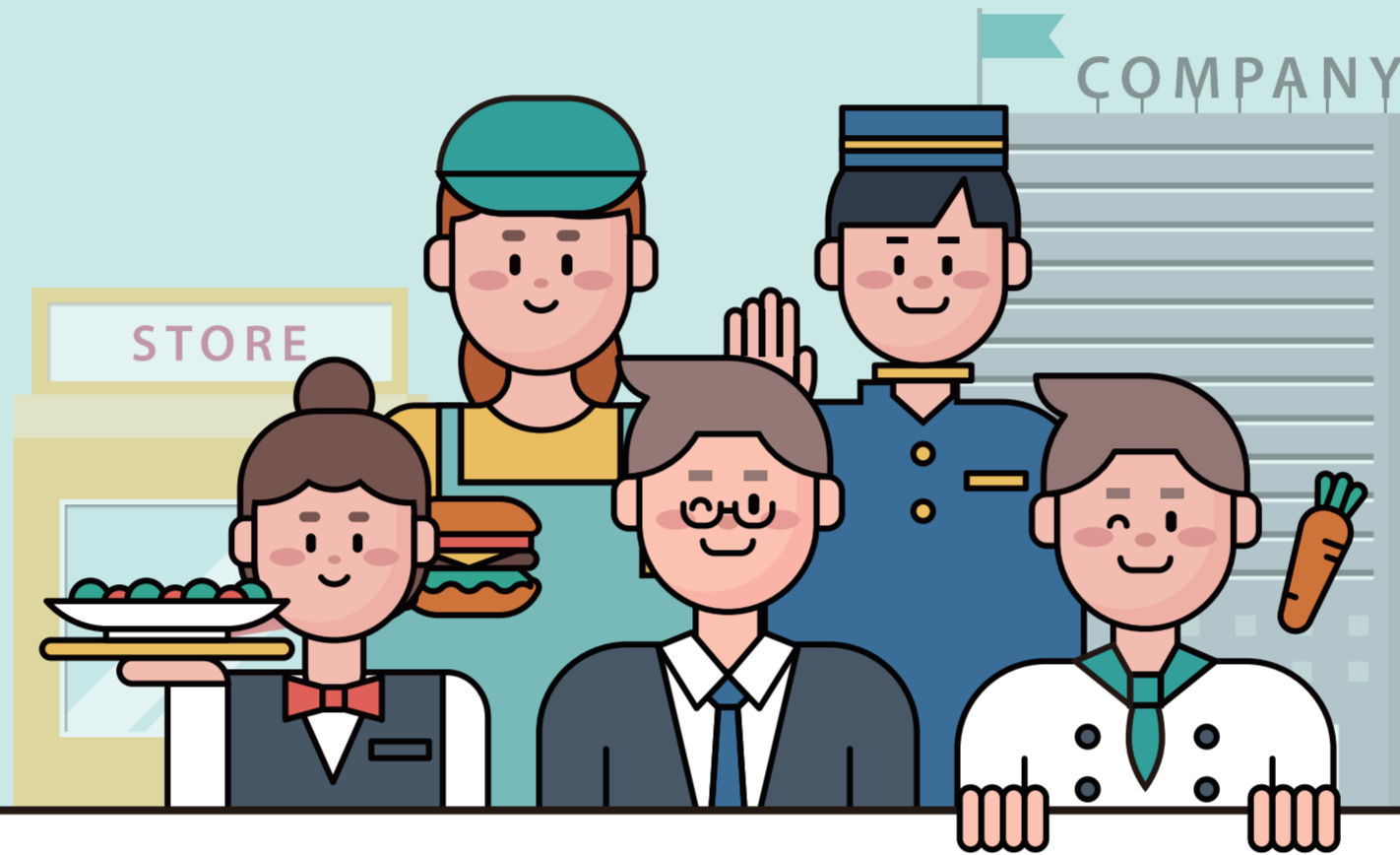


대한민국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 
**중소기업 취업청년  
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**



취업일자와 상관없이!  
**소기업 및 소상공인 직원 등 중소기업과  
 중견기업 취업청년(만34세 이하)이라면  
 누구나 연 1.2%로 1억원까지!!**

**2018년 9월 17일 신규접수분부터**

은행전세자금대출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대환가능  
 (취업일자 : 17.12.1부터 18.3.15이전 - 대환만 / 18.3.15이후 - 대환 및 이자일부지원)

**대출대상자**

-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
-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(세대주 예정자 포함)  
 \*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, 만39세까지 허용
- (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) 부부합산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 (맞벌이)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인 자

**대출금리 및 한도**

- 연 1.2% \* 단,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적용(최장 10년 이용 가능)
- 1억원 \*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%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
 \*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는 1억원까지 대출가능

**대출대상 주택**

- 전용면적 85m<sup>2</sup>이하 주택(주거형 오피스텔 포함) •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

**대환 및 이자 지원**

- **대환**  
 · 2017.12.1이후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 
 → 2018.12.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허용
- **대환 및 이자지원**  
 · 2018.3.15이후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 
 → 2018.12.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허용 및 차주가 기 납부한 이자금액 일부를 차주에게 지급  
 \* 단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